

수원지방법원 2023. 2. 22 선고 2022가단5311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2. 21.

판 결 선 고 2023. 2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1. 21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,129,7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1,129,7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은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카드대금’이라 한다), E 주식회사는 2003. 4. 30. F 유한회사에, F 유한회사는 2008. 3. 31. G 주식회사에, G 주식회사는 2011. 12. 28. 주식회사 H에, 주식회사 H는 2012. 9. 26.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3. 5. 6. D을 상대로 이 사건 카드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13. 5. 25.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 한다).

다. 한편 I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J와 자녀인 피고, D이 I을 상속하였고, 2021. 11. 21. I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,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.

3. 판단

가.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

원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, 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 수 있고,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.

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, 갑 제2, 14,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D이 2002. 8. 13. E 주식회사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, ② F 유한회사는 2003. 5. 27.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적어도 2003. 5. 27.에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2003. 5. 27.부터 5년이 경과한 2008. 5. 27.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, F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전전양수한 원고가 2013. 5. 6. 비로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,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.

나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D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였고, 2014. 4. 23.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한 주장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.

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.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(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).

따라서 D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고,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재산명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치 등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재산을 명시한 것일 뿐 선서서에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

포기하고 채무를 승인한다는 내용은 없어 그 행위 자체로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를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운

별 지 목 록

1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

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

참고 및 주택

1층 참고 93.5㎡

2층 주택 98.75㎡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

단층참고

48㎡

2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

대 443㎡

3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

전 1031㎡

4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

답 1470㎡

끝. 2

